

보도 일시	2022. 3. 8.(화)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3. 8.(화)
-------	--------------------	-------	----------------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전혜선 (02-2110-1530)
	통신시장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균 (02-2110-1533)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소라 (02-2110-1540)
	이용자보호과	담당자	서기관	조주연 (02-2110-1548)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및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 유형·기준 구체화
- ▶ 개정법을 본격 집행으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21.12.1.~' 22.1.10.)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바목)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였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㉕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㉖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㉗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㉘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㉙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 2.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 3.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앱마켓 매출액,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 4.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46조제1항, [별표6] 개정)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30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li> <li>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li> </ol> <p>② 앱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p>

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

<신 설>

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앱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4.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조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1. ~ 7. (생략)

<신 설>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1. ~ 7. (현행과 같음)

8.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

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에 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이 없이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 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 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